

제 2 장 주 식

제5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칠억(700,000,000)주로 한다. <개정 1997. 9. 23., 2003. 10. 21.>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억이천팔만이천이백주로 한다. <개정 1997. 9. 23.>

제8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 기명식 우선주식, 기명식 전환주식, 기명식 상환주식으로 한다. <개정 2001. 3. 23., 2006. 3. 24., 2019. 3. 27.>

제8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신설 2006. 3. 24.>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20. 5. 6.>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보통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존속기간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시에 정하며 그 경우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3 (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신설 2006. 3. 24.>

① 이 회사는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주식분할 또는 병합 기타 법률이 허용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4 (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신설 2006. 3. 24.>

① 이 회사는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우선주식을 회사가 의무적으로 상환하거나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상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회사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상환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개정 2019. 3. 27.>

1.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 회사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에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 주

식과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별도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⑥ 이 회사는 상환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그 상환주식을 제8조의3에서 정한 전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9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3. 10. 21.>

②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개정 1998. 8. 28.>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8. 28.>

1.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09. 3. 13.>
2.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 3. 13.>
3.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개정 1998. 8. 28., 2009. 3. 13.>
4.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개정 2009. 3. 13.>
5. <삭제 1998. 3. 30.>
6.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1999. 2. 26., 2009. 3. 13.>
7.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외국인 투자절차를 밟은 외국인 통신사업자 또는 외국인 금융/투자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1999. 10. 1., 2009. 3. 13.>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새로운 사업분야 진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투자자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설 2004. 3. 26., 개정 2006. 3. 24.>

④ <삭제 2003. 10. 21.>

⑤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 <조문명칭 변경 2000. 3. 17.>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사망, 강제퇴임이나 퇴직 또는 귀책사유없는 기타 비자발적 퇴임이나 퇴직사유(정년을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이후 당해 임직원이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7., 2003. 10. 21., 2009. 3. 13., 2012. 3. 23., 2020. 5. 6.>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해외영업,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0. 3. 17., 2003. 10. 21.>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개정 2009. 3. 13., 2020. 5. 6.>
2.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개정 2009. 3. 13., 2020. 5. 6.>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개정 2000. 3. 17., 2009. 3. 13., 2020. 5. 6.>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개정 2000. 3. 17.>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매입가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 3. 17.>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관련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7., 2003. 10. 21., 2009. 3. 13.>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7.>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개정 2000. 3. 17.>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00. 3. 17.>

제9조의 3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신설 2019. 3. 27.>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10조 <삭제 2006. 3. 24.>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조문명칭 변경 1998. 3. 30.>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신설 1998. 3. 30.>
- ② 명의개서대리인의 선임 및 대행업무의 범위에 관한 계약 등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신설 1998. 3. 30.>
- ③ 회사는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
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
를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개정 1998. 8. 28., 2019. 3.
27.>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8. 8. 28.,
2003. 10. 21., 2010. 3. 12.>
- ⑤ ~ ⑦ <삭제 1998. 8. 28.>

제12조 <삭제 2019. 3. 27.>

제13조 (기준일) <조문명칭 변경 2023. 3. 30.>

- ① <삭제 2023. 3. 30.>
- ②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
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개정
2003. 10. 21.>
-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 ④ <삭제 2023. 3. 30.>

